

2027~2030년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7년 ~ 2030년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급 기준액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7.(수) 14:00
- 장 소 : 화성시의회 2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10명 중 9명 참석 ※불참 :1명
- 주요내용 : 2027년 ~ 2030년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2. 결정내용

- 의정활동비
 - 2027 ~ 2030년 : 연 18,000,000원
- 월정수당
 - 2027년 : 연 41,054,930원(2026년 월정수당 대비 3.5% 인상)
 - 2028 ~ 2030년 : 각 연도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

3. 위원명단 및 참석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참석 여부	연번	구분	성명	참석 여부
1	위원장	홍상욱	○	6	위원	박정자	X
2	위원	김효근	○	7	위원	조종애	○
3	위원	최지숙	○	8	위원	오재경	○
4	위원	박수철	○	9	위원	공병완	○
5	위원	구대완	○	10	위원	유지선	○

4. 회의록: [붙임]

발언자 및 발언내용

[참석 위원 소개 생략]

○ [의회협력팀장]

이상으로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 위촉장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다음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끝까지 함께하시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비하고 의정비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에 따라 호선하며, 연장자이신 ○○○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위원]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신데 그냥 진행하세요.

○ [의회법무과장]

임시위원장으로 오셔서 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시면 됩니다.

○ [○○○ 위원]

[안건 상정, “위원장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할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제 2026-1호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시거나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및 발언내용

○ [OOO 위원]

OOO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OOO 위원]

추천하신 위원님 외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OOO 위원]

여기 의정비 심의위원은 또 처음이고

먼저 또 하셨던 위원장님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도록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세요.

○ [OOO 위원]

OOO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OOO 위원님을 추천하면 어떻겠습니까?

○ [OOO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 OOO 위원님이 적합하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저도 OOO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맡으면 수당이 더 나오는 건가요?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OOO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임기는 1년이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와 재청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언자 및 발언내용

○ [위원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 위원입니다.

우선 잠시나마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협력팀장님으로부터

의정비 심의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팀장님께서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 생략]

[안건 상정, “2027~2030년 의정비 결정의 건”] (의사봉 3타)

○ [위원장]

두 번째 안건, 제2026-2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정비 등의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정비중 의정활동비 부분부터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산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이내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정액 지급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2022년도에도 심의했나요? 2023년도에 했나요?

○ [의회협력팀장]

네,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발언자 및 발언내용

○ [000 위원]

2025년도에 했을 거예요.

○ [000 위원]

그때는 어떻게 정해졌지요? 3.5% 이상이면 다른 심의 절차가 있는 것 같아서요.

○ [의회협력팀장]

3.5%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입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매년 바뀝니다.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결정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이 3.5%이기 때문에 3.5%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보수는 3.9% 인상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지금 의정활동비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월정수당이고, 의정활동비는 정액입니다.

○ [000 위원]

그 정액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50만 원을 130만 원으로 정한다든가요.

○ [위원장]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연 1,800만 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현재 최대금액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발언자 및 발언내용

○ [위원장]

그렇습니다. 현재 월 150만 원입니다

○ [OOO 위원]

그 금액을 안으로 제시하시는 것이지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모두 같은가요?

○ [OOO 위원]

그렇다면 수원시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위원장]

의정활동비는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5년도와 2026년도 의정활동비는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연 1,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 [OOO 위원]

다른 시·군이 모두 동일하다면, 화성시만 변경하려면 최대금액보다 낮추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낮출지 합리적인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금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을 결정하겠습니다. 앞서 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우선 2027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한 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월정수당 연 3,966만 원 대비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로 인상할 것인지, 3.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것인지, 또는 동결할 것인지를 확정금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면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하므로 주민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3.5%를 그대로 올릴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및 발언내용

○ [000 위원]

수원시는 이미 3.5% 이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 [의회협력팀장]

맞습니다. 수원시는 이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000 위원]

화성시의 3.5% 인상금액보다 수원시의 금액이 더 높은데, 왜 그런 것인가요?

○ [의회법무과장]

2022년도부터 수원시의 기존 금액이 높았습니다.

처음부터 높게 산정되었고, 대부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기 때문에 비슷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당초 금액이 높았고, 예전에는 재정 여건도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다 보니 현재도 수원시의 금액이 높은 상황입니다.

○ [000 위원]

계속 올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군요.

○ [의회법무과장]

그렇습니다.

○ [000 위원]

현재 재정자립도는 수원시보다 화성시가 높지 않을까요?

○ [000 위원]

000 위원님은 더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발언자 및 발언내용

○ [000 위원]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3.5%를 초과하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 [000 위원]

그 절차가 어려운가요?

○ [000 위원]

여론조사에는 추가 비용도 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주민들이…….

○ [000 위원]

반대하나요?

○ [000 위원]

반대가 아니라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

3.5%로 결정하시죠.

○ [000 위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면 행정력도 많이 소요됩니다.

발언자 및 발언내용

○ [000 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현장을 보면 늘 화성시와 수원시를 비교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수원시가 늘 월등한 것으로 봅니다. 수원시는 정조 때부터 이어진 도시이고, 우리는 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도 언제까지 그 꼬리표를 달고 갈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 틀을 허물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추가로 인상하여 주민 동의를 받으려면 몇 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 [000 위원]

그거는 여기서 정합니다.

○ [000 위원]

지난번에는 화성시 월정수당이 조금 낮다고 하여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통과되었나요?

○ [위원장]

통과됐어요.

발언자 및 발언내용

○ [OOO 위원]

인접 시와 비교하고 우리가 언젠가 수원시를 넘어야 한다는 말씀도 맞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의회 신청사를 짓고 개인 사무실도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 드린 것 같습니다. 타 시·군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그렇다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에도 못 미치면 감시와 견제 기구로서 의원님들의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3.5% 범위 내로 결정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 [OOO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앞으로는 누군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간적인 위상도 높아졌으니 그에 비례하여 함께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OOO 위원]

앞서 OO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신청사를 짓고 개인 사무실도 마련한 데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정비까지 더 올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OOO 위원]

팀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3쪽에 제시한 참고자료는 화성시의회에서 선정한 것인가요? 여덟 가지 정도 제시하셨는데, 과거 자료를 제외한 참고자료 7번까지는 어디에서 선정한 것인가요?

발언자 및 발언내용

○ [의회협력팀장]

참고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내려 주었고, 그에 맞추어 작성했습니다. 의정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 [OOO 위원]

인상할지 동결할지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제시하신 것 같은데, 참고자료 1번부터 4번까지는 외부적인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참고자료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활동했는지가 지역주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현황만 제시되어 있는데, 자치법규 관련 활동도 중요하지만 출석률이나 선거 때 공약했던 사항의 이행률도 제시하면 지역주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회법무과장]

그런 자료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에는 주로 조례 제정·개정·폐지 현황이 포함됩니다. 출석률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번에는 조례 제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의회협력팀장]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자치법규 현황과 회기일수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에 자치법규 현황과 회기일수 자료를 작성하여 회의자료에 첨부했습니다.

발언자 및 발언내용

○ [OOO 위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평가할 때도 출석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이드라인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법규 현황만 제시하는 것보다 의회 참석률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OOO 위원]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문제점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구성되고 있지 않나요?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체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 [OOO 위원]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OOO 위원]

언론에서 해 주겠지요.

발언자 및 발언내용

○ [OOO 위원]

의원님들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찾아다니며 해결해 주는 역할이지 권위의식을 갖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 수도 25명에서 31명으로 늘어 시 예산 부담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에 몇 번 가 보았는데 잘 지어 놓았습니다. 개인 사무실까지 마련한 곳이 화성시뿐인 것 같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OOO 위원님께서서는 더 지급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선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OOO 위원]

말씀하신 김에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화성문화원은 지어진 지 26년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인구가 이렇게 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의 문화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10년, 20년이 아니라

적어도 30년, 5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집무실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의회 신청사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0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만 지어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는 미래를 보고 해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유현준 건축가를 모시는 행사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소 그분의 책을 읽고 존경하는데, 그분도 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안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성시나 의회나 문화원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렇게 나아가야 화성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 및 발언내용

○ [000 위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임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렵고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인상의 효과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3.5%가 아니라 35%를 인상하더라도 3~4개월이 지나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하며, 특히 의정비에 관한 사항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선출직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인맥이 없는 주민은 어디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토론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의결할 사항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으면 합니다.

○ [000 위원]

그럼 뭐 의결로 가시죠.

○ [위원장]

000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도 부족하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심의 때는 현재 참고자료에 더하여 의회의 지난 4년간 출석자료나 주요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라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더 내실 있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면 3.5%보다 더 지급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 활동이 미흡하다면 동결하는 등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요청하기 곤란하다면 심의위원회가 소집될 때 임시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의회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정비를 심의하는 데 시에서 받은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발언자 및 발언내용

○ [000 위원]

재선 의원은 가능하지만 신임 의원은 평가자료가 없지요.

○ [000 위원]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는데 이전 4년간 실적을 검토하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출근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출근하지 않는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다니기도 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의원은 시민들이 선거로 판단하므로 여기에서 그 문제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5%인지 3%인지 등 적정선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2027년도 금액은 확정해야 하고,
20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할 것입니다.
2027년도는 3.5%로 인상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 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2027년도 우리 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급액 연 3,966만 원에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100% 반영한 금액인 연 4,105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급액에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100% 반영한 연 4,105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언자 및 발언내용

○ [위원장]

방금 결정한 것은 2027년도 확정금액입니다. 다음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 같음할까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우리 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2028년도에는 202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고, 2029년도에는 202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며, 2030년도에는 202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우리 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2028년도에는 202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고, 2029년도에는 202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며, 2030년도에는 202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 [000 위원]

위원장님, 회의 종료 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두 가지인데, 이 외에 시의원들이 추가로 받는 다른 항목이 있나요?

발언자 및 발언내용

○ [의회협력팀장]

다른 항목은 별도로 여비가 있습니다.

○ [의회법무과장]

공무원처럼 국외연수시 여비를 지급받고, 국내연수 등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받는 항목은 없습니다.

○ [OOO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년간의 수당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4년 후 지방의원이 다시 선출되었을 때 또 1년 임기의
심의위원들이 선출되어 의정비를 심의하나요?
매년 심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의회협력팀장]

한 번에 4년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